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59

발의연월일: 2024. 6. 10.

발 의 자:진성준ㆍ이재관ㆍ허 영

민병덕 • 이연희 • 박상혁

김윤덕 • 위성곤 • 황정아

조 국・김주영・김 윤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이를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탈리아에서는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하루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고, 벨기에는 15일 전일제나 30일 반일제 중 선택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사용의 유연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 사용 가능 횟수를 현행 1회에서 3회로 확대함으로써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이 보다 확대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4항).

법률 제 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4항 중 "1회"를 "3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4항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의 첫째 날을 사용하 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u>1회</u> 에	④ <u>3</u> <u></u>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			
다.	–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